

분쟁광물 정책

제정 : 2016 년 06 월 01 일

개정 : 2022 년 06 월 01 일

분쟁광물 개요

분쟁광물은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의미하며, 그 대상국은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해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콩고,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10 개국입니다. 이들 지역은 반군, 정부군 등 무장세력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광물채취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침해와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분쟁광물 규제 조항이 포함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SEC(미증권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에게 분쟁광물의 사용실태 보고와 정보공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상장사는 물론 상장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기업도 이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쟁 지역



분쟁광물 관리 정책

유진테크는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 제품생산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1)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준수합니다.
- 2) 협력사들이 책임 있는 광물 보증 프로세스(RMAP; the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를 준수하는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하도록 지원합니다.
(준수 제련소 목록기준, <http://www.responsiblemineralsinitiative.org>)
- 3)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에서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템플릿'을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모든 제련소 및 원산지 정보를 파악합니다.
- 4) OECD 실사지침서(OECD DDG)에 따라 실사 절차를 수립할 것이며, 필요 시, 협력사의 분쟁광물 사용보고 관련절차 및 자료에 대해 실사를 수행합니다.
- 5) 고객 및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분쟁광물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6) 분쟁광물 관리 정책이 하위 공급사슬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사가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사 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분쟁광물 관련 문의처

1. 온라인 상담 : 홈페이지 사이버신문고 이용
2. 우편 상담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28 유진테크 CSR담당자
3. 이메일 상담 : sungmin.park@eugenetech.co.kr
4. 전화 상담 : 031-330-3729